

# 안산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의안  
번호 264

제출년월일 : 2013. 2. 22.

제출자 : 안산시장

## □ 제안이유

- 안산시 문화예술진흥기금 공모사업과 재단에서 실시하는 지역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의 취지와 목적이 유사하여 문화예술진흥기금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무를 2013. 1. 3. 출범한 안산문화재단에 위탁함으로써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고자 함.

## □ 주요내용

- 가. 시장은 기금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안산시 안산문화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(안 제5조4항)
- 나. ‘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 “에 따른 조문 정비

## □ 개정조례안 : 불임

## □ 신·구조문대비표 : 불임

## □ 관계법령발췌서 : 해당없음

## □ 관련사업계획서 : 해당없음

## □ 예산수반사항 : 해당없음

## □ 사전예고결과 : 의견없음

- 입법예고: 2013. 1. 9 ~ 29 (20일간)

## □ 기타 참고사항 : 불임

- 안산시 문화예술진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계획  
(문화예술과-17999호 2012.12.27)

# 안산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안산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항 중 “시장” 을 “안산시장(이하 “시장” 이라 한다)”로 하고, 제2항 중 “제1항의 규정에 의해” 를 “제1항에 따라”로 하며, 제3항 중 “안산시” 를 “안산시(이하 “시” 라 한다)”로 한다.

제3조제3호중 “기타” 를 “그 밖의”로 한다.

제4조제1항제3호 중 “기타” 를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제5조제2항 중 “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” 를 “제8조에 따라”로 하고,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 시장은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안산시 안산문화재단에 위탁 할 수 있다.

제13조제2항 중 “제1항의 규정에 의한” 을 “제1항에 따른”으로 하고, 제2항 중 “기타” 를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제15조제2항 중 “제1항의 규정에 의한” 을 “제1항에 따른”으로 하고, 제3항 중 “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” 를 “제1항에 따른”으로 하며, “시의회” 를 “안산시의회”로 한다.

## 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관 실·과		문화예술과
입 안 자	실·과장	문화예술과장
	직위·성명	정 송 자
	담당·팀장	예술계장
	직위·성명	안 옥 희
담당자		김 정 현
성명·전화		(행정 2795)

# 안산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신·구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2조(기금의 설치) ①시장은 문화예술진흥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산시 문화예술진흥기금(이하 "기금"이라 한다)을 설치한다.	2조(기금의 설치) ①안산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.....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해 설치된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.	②제1항에 따라.....
③기금은 2000년부터 2004년까지 5년간 안산시 일반회계 예산으로 총 30억원을 매년 6억원씩 출연 한다.	③.....안산시(이하 "시"라 한다).....
제3조(기금의 재원)	제3조(기금의 재원)
1. ~ 2.(생 략)	1. ~ 2. (현행과 같음)
3. 기타 수입금	3. 그 밖의 .....
제4조(기금의 용도)	제4조(기금의 용도)
① 1. ~ 2.(생 략)	① 1. ~ 2.(현행과 같음)
3. 기타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 또는 활동	3. 그 밖에 .....
②(생 략)	②(현행과 같음)
제5조(기금운용관리)	제5조(기금운용관리)
①(생 략)	①(현행과 같음)
②시장은 기금을 「안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기금 관리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.	②.....제8조에 따라.....
③(생 략)	③(현행과 같음)
<신 설>	④시장은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안산시 안산문화재단에 위탁 할 수 있다.
제13조(기금운용계획) ①(생 략)	제13조(기금운용계획) ①(현행과 같음)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 계획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	②제1항에 따른.....
1. ~ 3.(생 략)	1. ~ 3.(현행과 같음)
4. 기타 기금의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사항	4. 그 밖에 .....
제15조(기금결산) ①(생 략)	제15조(기금결산) ①(현행과 같음)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.	②제1항에 따른.....
1. ~ 3.(생 략)	1. ~ 3.(현행과 같음)
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6월 말일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·의결을 받아야 한다.	③제1항에 따른.....
	.....안산시의회.....

# 안산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 안 번 호	2364
--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13년 3월 7일  
제 출 자 : 문화복지위원장

## 1. 수정이유

- 문화재단의 안정화 이후 기금의 사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부칙에 시행일을 두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기금 사무의 위탁의 시행일을 2014년 10월 1일 이후로 적용함.(부칙)

# **안산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**

## **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**

안산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 제5조제4항은 2014년 10월 1일부터 적용한다.

## 안산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수정안 조문 대비표

현행안	개정안	수정안
	<p><u>부칙</u></p> <p>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 행한다.</p>	<p><u>부칙</u></p> <p>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 행한다. 다만 제5조제4항은 2014년 10월 1일부터 적용한다.</p>

# 안산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

## 일부개정 조례안(수정안 포함)

안산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항 중 “시장”을 “안산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”로 하고, 제2항 중 “제1항의 규정에 의해”를 “제1항에 따라”로 하며, 제3항 중 “안산시”를 “안산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”로 한다.

제3조제3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의”로 한다.

제4조제1항제3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제5조제2항 중 “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제8조에 따라”로 하고,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 시장은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안산시 안산문화재단에 위탁 할 수 있다.

제13조제2항 중 “제1항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제1항에 따른”으로 하고, 제2항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제15조제2항 중 “제1항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제1항에 따른”으로 하고, 제3항 중 “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제1항에 따른”으로 하며, “시의회”를 “안산시의회”로 한다.

### 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 제5조제4항은 2014년 10월 1일부터 적용한다.